

의안번호	2202526
의 퇴 인	민병덕 의원
회 답 일	2024.08.27.
추 계 번호	24C25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u>재원(財源)</u>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u>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	의무규정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u>행정 운영 등</u> 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유보통합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실현 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어린이집의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임
 - 2024년 현재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두 기관은 운영시간, 운영일수, 교사자격, 양성체

계, 시설 기준, 학부모 부담 경비 등¹⁾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이에 교육부는 '22년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추진을 포함하고, '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음
 -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는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밝힘²⁾
-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원예산구조에 있어도 차이가 있으며, 이의 주요재원인 '유아교육특별회계'(이하 '유허회계'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표 1] 영유아 교육·보육예산(2024년)

(단위: 억원)

구분	총계	누리과정 비용			기타 교육·보육비용		
		예산	재원	소관	예산	재원	소관
유아교육 (유치원)	55,450	16,797	유허회계 (교육세)	교육부	39,653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114,789	15,309	유허회계 (국고)	교육부	47,701	국고	교육부
					1,674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29,445	지방비 (국고매칭)	지자체
					20,660	지방비 (특수보육 시책)	지자체
합 계	170,239				139,133		

자료: 교육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증가할지 여부와 그 증가 규모,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가 소요 예산 규모 및 부담 주체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참조 (2024.06. 교육부)

2)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참조 (2024.06. 교육부)

- '24년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예산은 유특회계(교육세, 국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 국고(교육부), 지방비(국고매칭)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관련 재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표 2] 재정 개편 방향 및 지자체 예산 이관 계획

2023년 현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이관·지원 방향	통합모델 적용 개편방향
① 복지부 국고(5.1조)	① 교육부로 이관	①+② 별도 특별회계 신설검토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② 유특회계(3.5조)	② 지속지원(~'25)	
③ 시도, 시군구예산 (국고대응 3.1조, 자체추진 약 2.1조)	⇒ ③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③ 이관 후 지속 지원
④ 시도교육청 예산(3.6조)	④ 지속 지원	④ 지속 지원
		⑤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 활용 추진

자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4.8.)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24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규모 보다 증가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규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
 - 교육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유보통합 재원은 크게 ①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와 ②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뒤 지속 지원될 기존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③기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속 지원될 예산, ④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으로 활용이 추진될 예산으로 구분됨
 - 다만, 기존 시도교육청 예산을 제외한 '26년 이후 유특회계 예산, 시도 및 시군구 예산,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으로 활용될 예산 등 유보통합 이후 기존 예산에서의 증감여부 및 그 규모,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움
 - 유특회계의 경우 교육부의 국고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26년 이후 해당 회계에 지원되고 있던 국고 부담분을 신설되는 특별회계에서 계속 분담할지 여부에 대한 예상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움
- * 유특회계에 대한 국고 지원분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국고부담분이 감소되더라도

교부금 특히 증액교부의 형식으로 지원될 경우 총재정규모는 유지될 수 있으나,

유평회계 폐지 이후 국고 부담분이 감소할 경우 관련 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구 예산 중 자체 추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그대로 이관하여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³⁾

*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이 모두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교육 및 보육 수준 유지 또는 상향된 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24년 6월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2024년) 말 확정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 및 부담 주체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교부될지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규모 증감 여부 등에 대한 예측에도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과 지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가 증액 교부⁴⁾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4.8.) 재인용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제3조제4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으므로 교부액이 증가할 수 있음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으나, 별도의 증액 교부 없이 기본 교부금 재원⁵⁾만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기존에 국가가 지원하던 어린이집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는 상호 간 재정지출 증감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5)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금액(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